



# 東國大同定會報

발행인 : 원용선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F. 02)733-0306 인쇄 : (주)한우리SJM

2015년 (단기 4346년) 4월 30일 (목)

<http://dongguk.info>

제234호

## ‘하나된 동창회’ 차기 회장 추대한다

정기이사회 및 총회 개최 … 5월28일 앰배서더호텔서

### 1,2부로 나눠 임원 선출 · 일부 회칙 개정안 등 상정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 이사회 및 정기 총회가 5월28일(목) 오후6시30분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서울 장충동)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이사회 및 총회는 신임 임원 선거 등을 위한 것으로 제1부 정기 이사회, 제2부 정기 총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이사회는 회무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으로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안과 일부 회칙 개정안이 상정된다.

제2부는 총회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추인,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11월11일(1차)과 올해 3월16일(2차), 4월13일(의신청 기각) 등 3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박종윤, 송석환 동문의 회장 당선은 무효로

서 23대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다.

제23대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1차 판결이 있는 지난 11월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원 회장은 지난해 11월12일 고문단 회동에서 제23대 회장 수임과 연말총회 개최를 요청받았으나 “동창회 대화합을 위해 연초 적절한 시기에 총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제23대 회장이 적법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총회소집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본회는 동창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사회 및 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활동



▲ 4월28일 선관위 1차회의에 앞서 전영화 수석부회장이 박대신 위원장(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신임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임원 등 선거규칙 제3조(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의거, 지난 4월27일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했다. 임기는 2년.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8일(월) 오후 6시 본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대신 동

문, 부위원장에 강신승 동문을 선출하는 한편 임원 선거 절차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또 선거일정은오는 5월6일부터 18일까지 임원선거 후 보자 등록을 받고, 5월28일 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새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박대신 (69/73국문, (주)동우 회장), 강신승 (72/77농경, 前 교장), 홍석표(75/82경영, 풍림산업 부사장), 조충미(81/85교육, 에이서유학원장), 김종필(82/88정치, 내일신문 정치부장), 송인모(83/90경행, 영인기술 대표), 오수환(84/88법학, 변호사) 동문 등이다.

정기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 25만 동문님께 보내는 편지



매일에 몰두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창회는 어떠한 난관이 온다해도 흩어짐없이 소임을 다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동창회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입은 동문들이 많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문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국대학교가 109년이라는 역사를 쌓아 오는 동안, 우리 동창회도 초대 동창회장으로 한 용운 대선사가 활동한 이래 학교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힘은 개인이나 몇몇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 동국, 동창

### 이기심에서 벗어나 모두를 생각할 때 갈등과 분란을 화합과 협력으로 승화

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깊어만 갚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서울지방법원) 지난 3월16일 23대 회장이 유일한 동국대학교총동창회 회장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법정에서는 의신청과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제가 23대 총동창회장으로서 회칙과 선거규칙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종윤 선배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동창회는 정상화의 길로 궤도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일부 동문들은 아직도 동창회의 통합을 방해하는 문자와

회’를 생각하며 갈등과 분란도 화합과 협력으로 이끌어 온 동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창회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주인은 동문들이며 또한 화합과 발전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뜻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5월28일, 모교와 동창회를 위한 화합의 한마당인 총회에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3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23대 회장 원용선 드림

# “박종윤의 직무집행 정지 · 회장 명칭 사용 금지”

	서울 중앙지방법원 <b>제50민사부</b> 결정	
사건	2014카합8107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정환민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302호(관훈동, 백상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영, 최영현	
채무자	박종윤	
	대전 중구 대종로 215(석교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주문		
<p>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p> <p>가. 채무자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p> <p>나. 채무자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2.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p> <p>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p> <p>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p>		
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동창회 회장 선출의 효력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항은 2006. 4. 18. 선거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2007년경 실시된 이 사건 동창회 제24대 회장 전순표에 대한 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된 사실, 제24대 회장 전순표, 제25대 및 제26대 회장 이연택에 대한 회장 선출은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회원이 없어 추대위원회의 추대 및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각 소명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은 재산 정도에 따라 이 사건 동창회 회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회원들의 회장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회장 선출에 관한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를 왜곡시켜 단체의 민주적 구성원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동창회 제24대 이후의 각 회장 선출은, 대다수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장 선출에 관한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순표에 대한 제24대 회장 선출, 이연택에 대한 제25대 및 제26대 회장 선출은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제23대 회장이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임기만료 후에도 적법한 후임 회장의 선출시까지 이 사건 동창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연택이 구성한 2차 추대위원회, 이연택이 소집한 채무자 측 이사회 및 총회는 모두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구성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각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채무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창회 회칙 및 선거규칙은 유효하므로, 전순표, 이연택, 채무자를 이 사건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한 각 결의는 유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 화합 위해 ‘승소’하고도 동창회 문자메시지 안보내 서울중앙지법 1차 · 2차 가처분서 모두 ‘당선 무효’

법원이 “박종윤의 동국대 총동창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회장 명칭 사용까지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수)는 3월16일 동국대총동창회(회장=원용선)에서 박종윤 동문을 상대로 제기한 ‘동창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

했다. 박종윤 동문의 직무집행 정지는 물론 회장 명칭 사용까지 금지한 것은 지난해 11월11일 송석환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시에 판결문에서 박종윤 동문도 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3월25일 둘로 나뉘어 총회를 열고 송석환, 박종윤 동문

을 회장으로 각각 선출하면서 양분돼 최근까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송석환 동문은 지난해 박종윤 동문측이 제기한 가처분 판결로 법원 판단을 수용해 회장직에서 곧바로 물러났다. 판결문은 회장의 6억 발전기금 납부를 문제삼아 발전기금 조항이 없었던 23대 원용선 회장으로 회장직이 소급됐다.

동문사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4차례에 걸쳐 박종윤, 송석환 동문 모두 당선무효로 자격이 없기 때

문에 이제는 23대 회장이 유일하게 회장직을 수행해 총동창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편 정환민 본회 사무총장은 “동문들간 소송을 진행한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완전 승소’ 했음에도 패소자에 대한 배려로 동문들에게 공지문자 발송도 자제했다”며 “박종윤 선배께도 동문선배님으로서 예우를 갖출 생각이다. 조용한 가운데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동국장학회 표류 ‘정상화’ 시급 대부분 임기 끝난뒤 이사회 … 편법 이사장 승인 반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총동창회 정통성 다툼과 맞물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선출을 두고 진행중인 소송을 귀 법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존 이사장(이연택)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의 존부를 확정 판결시까지 판단할 수 없기에 이사장 취임 신청을 반려한다”고 회신했다. 장학회는 지난해 이연택 전 이사장으로 의해 박종윤 동문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해 서울시교육청에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장학회 정관은 “이사장은 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관 21조)는 규정에 의해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장학회 유고로 재학생의 장학사업은 물론 기금 조성, 임원 선임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장학회 임원은 15인의 이사중 8명과 감사 2명중 2명 모두가 지난해 6월27일(4명)과 7월10일(6명) 각각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가 다 끝난 뒤에야 이사회를 소집해 충원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였다. 임기가

끝난 임원들은 그동안 장학사업에 많은 기금들을 출연한 동문들이었다.

장학회는 이 같은 행태때문에 총동창회 정서를 무시하고 장학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8월20일 소집된 이사회는 남은 이사 7명중 3명만 참석해 성원미달로 1차 유회되었다. 계속해서 이사회를 성원시키기 위해 2명의 이사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뒤 나머지 5명의 이사중 3명(이연택, 김동정, 이인정)만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새 임원을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새로 선임된 임원 10명중 일부는 장학기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 등 기부전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임원명단 (개편 전)

직명	성명	임기
이사	구자선	10.06.28 ~ 14.06.27
이사	원용선	10.06.28 ~ 14.06.27
이사	한우삼	10.06.28 ~ 14.06.27
이사	박준형	10.06.28 ~ 14.06.27
이사	송석환	10.07.11 ~ 14.07.10
이사	김진문	10.07.11 ~ 14.07.10
이사	서영준	10.07.11 ~ 14.07.10
이사	나경미	10.07.11 ~ 14.07.10
이사	이연택	11.05.09 ~ 15.05.08
이사	이두철	11.05.09 ~ 15.05.08
이사	김동정	11.05.09 ~ 15.05.08
이사	홍파스님	11.05.09 ~ 15.05.08
이사	전순표	11.05.09 ~ 15.05.08
이사	김환배	12.11.29 ~ 16.11.28
이사	이인정	12.11.29 ~ 16.11.28
감사	김진역	12.08.09 ~ 14.07.10
감사	이홍섭	12.08.09 ~ 14.07.10

(2014.3.25 기준)

# 동창회 통합 ‘합의’ … ‘불복’ … “이제는 끝내자”

## 원용선 회장-박종윤 고문간 조속 정상화 다짐 “차기 회장선출은 회칙 및 선거규칙 따르기로”

정통성 문제로 양분되어 1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오던 총동창회가 마침내 대통합을 선언했다.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과 박종윤 고문은 4월9일 서울 인사동 총동창회사무실에서 만나 ‘총동창회 정상화를 위한 대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 따라 총동창회는 조만간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합의서는 “총동창회는 그 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모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합에 합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합의사항은 “▷총동창회 통합단일화를 이룬 공로를 평가해 박종윤 회장을 예우한다 ▷차기 회장 선출은 총동창회 회칙 및 선거규칙에 따른다 ▷박종윤 회장 측은 총동창회 분열시 반출된 통

장, 도장, 카드, 직인 등 비품 일체를 적절한 시기에 원용선 회장에게 인계한다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본 합의서 채택 후(3일 이내)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양측 간 법적 다툼은 하지 않는다” 등 4개항을 담았다.

이에 앞서 원용선 회장과 박종윤 고문은 3월4일 인사동 사무실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분된 총동창회 통합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용선 회장은 “학교와 동창회가 잘되자고 하는데 서로 무슨 욕심이 있겠나”며 “원만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종윤 고문의 방문을 환영했다.

박 고문은 “모교가 개교 이래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총동창회가 양분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 원용선 총동창회장과 박종윤 회장은 4월9일 오후 서울 인사동 백상빌딩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상화를 위한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진 원쪽부터 정환민 사무총장, 이은기 부회장(박 고문측), 김영화 부회장(박 고문측), 모교 정각원장 법타 스님, 박종윤 고문, 원용선 총동창회장, 전영화 수석부회장, 최창동 사무총장(박 고문측).

것을 내려놓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통합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 통합추진TF팀 3차례 회동

한편, 둘로 갈라진 총동창회가 양측 3

명씩으로 통합추진TF팀을 파견해 3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반복하지 않고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총회 소집권 등의 의제를 놓고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없이 해체됐다.

## “동창회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 박종윤 고문 사퇴 선언

지난 4월9일 원용선 총동창회장과 박종윤 고문사이에 이뤄졌던 총동창회 통합선언이 일주일도 못가서 번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당초 총동창회는 법적 판단에 의해 원용선 제23대 총동창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박종윤 고문이 분쟁의 한 쪽이었다는 점을 예우하여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대통합을 위한 합의서까지 서명했었다.

박종윤 고문은 4월15일 동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회장직 사퇴 인사에서 “4월9일 원용선 고문과 재회합을 갖고 장시간 격론 끝에 정상화 원칙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합의서 채택 3일 이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환민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박 고문이 주장하는 소송 취하 문제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무효화할 수 없었다. 또 이의신청은 박 고문이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적법한 회장이 23대 원용선이라는 점만 재차 확인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 고문의 회장직 사퇴에 대해 일부 동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놓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던 박 고문이 소송 취하를 핑계로 그만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환민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민·형사소송 법조항은 원천적으로 취하할 수는 없다”며 “박종윤 고문은 판결에 따라 원래 회장도 아니었으나 통합을 전제로 예우를 논의하던 중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 사무총장은 “합의서에 따라 4월13일, 이연택 동문에 대한 5억 발전기금 미납 소송을 취하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박종윤 측이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취소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 회칙 등 개정 위원 5명 위촉

본회 회칙과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회칙 등 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칙 등 개정안은 총동창회 양분에 따른 법정소송에서 지적되었던 총동창회장 벌전기금 문제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28일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안건이다.

위원으로는 △김상겸(77/81법학, 동국대 법대 교수) △윤명금(77/81영문, 영문과동창회장) △김상래(79/86, 농협 종로지점장) △윤재민(81/85사학, (주) 범무사 대표이사) △김강균(96/03경행,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했다.

## 2015 정기이사회 개최

본회 회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5월28일 (목) 18:30
  - 장 소 :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안 건 : 결산 및 예산안
- 회칙 및 선거규칙 개정  
임원의 선임 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2015 정기총회 개최

본회 회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5월28일 (목) 19:30
  - 장 소 :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안 건 : 결산 및 예산안
- 회칙 및 선거규칙 개정  
임원의 추대 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법원 “제23대 회장만이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직 수행”

## 동창회 정통성 다툼 법정소송 경과 보고

### I. 박종윤, 송석환 상대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재판부 : 서울지법 민사 50부
- 신청일 : 2014.5.2.
- 결정(판결) : 2014.11.11.
- 결정내용 주문 : 송석환은 동국대 동창회장직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판단이유 : 2006.4.18 제정한 동국 대동창회 선거규칙은 사회상규 위반과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동 규칙 8조2항, 26조 등 이건과 관련 각 조항은 효력무효이므로 24대부터 25,26,27대 회장 전부 당선 무효이며, 이들이 행한 행정위도 무효. 따라서 박종윤, 송석환도 당선무효이므로 23대 회장이 다음 회장 뽑힐 때까지 회장임을 확인

### I-1. 박종윤,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 항고

- 항고일 : 2014.11.12.
- 항고 이유 : 24,25,26대 회장까지 확대한 ‘당선무효’ 결정 부당
- 2015.3.23 박종윤, 항고소 취하(정 환민이 박종윤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2015.3.16) 직후 취하)

### II. 정환민, 박종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재판부 : 서울지법 민사 50부
- 신청일 : 2014.12.16.
- 결정(판결) : 2015.3.16.
- 결정내용 주문 : 박종윤의 동국대 동창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며, 박종윤은 동국대 동창회장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판단이유 : 상기 I-1번 소송 판결 내용과 동일

### II-1. 박종윤, 2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불복, 이의신청

- 재판부 : 서울지법 민사 50부
- 신청일 : 2015.3.19.
- 신청이유 : 이연택의 25,26대 회장 직은 유효하며 그가 총회를 열어 동창회장으로 당선시킨 박종윤도 회장 자격 유효
-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2015.4.13)
- 기각결정 이유 : 상기 I 번 판결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유 없음.

### II-2. 채무자(박종윤)승계인 나경미, 항고장 제출

- 제출일 : 2015.4.21.

- 동창회 수석부회장 류수택이 2015.2.26 사임하여 나경미가 지원 승계했다고 고지
-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항고로 재판 불성립

### III. 이연택 전 회장에 대한 발전기 금납부 청구소송

- 정환민 사무총장이 이연택을 상대로 선거규칙 제8조, 26조에 의거 발전기금 미납분 5억원 납부 요구
- 서울지법 제18 민사부
- 소 제기일 : 2014.3.20.
- 2차례의 조정과 1차 재판을 끝내 놓고 대기 중에 채권자 정환민 2015.4.13 소 취하 (박종윤의 제의에 대한 답으로)
- 2015.4.21 채무자 이연택측 소 취하 부동의서 제출(재판 계속의지 표명)
- 2015.5.19 2차 재판 예정

## 유사동창회 활동 ‘경고’ 조치

최근 법원 판결로 회장 자격을 상실한 박종윤 고문 측 일부 동문들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동창회 활동으로 동문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4월22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주간 총동창회 소식’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한 총동창회를 “소수 패거리의 모의, 거짓말과 음해, 합의 파기, 회칙 무시같은 형태…”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바람에 동문들로부터 비난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총동창회는 유사동창회 활동에 경고 전화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거쳐 4월3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소식지 및 회비납부 안내 등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나경미 직무대행체제 “자격 없다”

## 법원판결 무시 ‘동창회 정상화’ 방해

박종윤 고문이 지난 4월15일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동창회에서 손을 떼었다. 하지만 일부 동문들이 나경미(70/74정외, 여)동문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동창회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

신당동 박종윤 고문 개인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둔 신당동 동창회는 지난 2월 26일 류수택 동문이 수석부회장직을

사임하자 나경미 동문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했다.

나경미 직무대행 체제는 박종윤 고문이 없는 자리에서 일부 동문들에 의해 내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로 박종윤 고문은 회장직무집행을 정지당했고, 회장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동 동창회를 고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형태에 동문들의 비난이 거세다.

본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장수정(63/67 임학)동문은 “박종윤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항고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여 3차례나 패소했으면 깨끗이 승복해야지 무슨 추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창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동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당동 동창회에서 소송 당사자도 아닌 나경미 동문 명의로 지난 4월 21일 서울 고법에 항고장을 제출(소송 불성립)한데 대해서도 동문들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통합정신에 발목만 잡는 저의가 매우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총동창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회칙 제12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총동창회 25만 동문을 이끌어 나갈 차기 임원 후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받습니다.

1. 임원 종류 : 총동창회장 (1인), 감사 (3인)
2. 등록 마감 : 2015년 5월6일 ~ 5월18일 오후 6시까지
3. 등록처 :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33-0303, 0302 / 팩스 02-733-0306)
4. 구비서류 (선거규칙 제7조)
  - 등록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사진부착) - 정회원 증명서 1부 - 서약서 1부 (회장 입후보자만 해당)
  - 선거 참관인 명부 (3인 이내)

※ 등록신청서는 총동창회 소정양식 이용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간사(이상호 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30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선거관리위원회